

교육·복지·사람중심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2012. 6. 7 (목) 10:00

사회건설위원회
영등포공원 현장방문 보고



도 시 국
(푸른도시과)

순 서

- 영등포공원 현황 1
-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공사 2
-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
- 영등포공원 흡연 단속 계획 4

영등포공원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3
- 공원 면적 : 61,544 m²
- 건물 면적 : 1,294.8 m² (문화회관980.8, 화장실72.7, 관리사무소241.3)
- 시 설 율 : 36.5%
- 주요 시설
 - 조경시설 : 분수대, 개울, 담금솔, 목교 등
 - 운동시설 :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 1997.05.10 (서울시고시 138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 1997.06.26 (서울시고시 211호)
- 우리구 관리 이관 : 2009.07.29
- 영등포공원 관리직원 : 4명 (행정1, 기술1, 기능2)

◆영등포공원 위치도◆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공사

영등포 공원의 이용객 증가 및 공원 이용의 활성화에 따라 문화 충족 욕구가 많으나 청소년이 이용할 문화 공간이 부족하므로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 함

공사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3 (영등포공원 내)
- 규 모 : 야외무대 설치 1개소 (4m×12m)
- 공사 기간 : 2012. 05.23 ~ 06.11
- 도 급 비 : 43,912천원
- 시 공 사 : 에코랜스 (주) 대표 김한구

추진경위

- 2012. 03.29 : 사업계획 수립
- 2012. 05. 02 : 공사 발주
- 2012. 05. 23 : 계약 및 착공
- 2012. 06. 11 : 준공 예정

◆ 조 감 도 ◆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영등포 공원은 많은 지역주민이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 기 조성된 체육 시설로는 이용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이용객 수가 많은 노인 층을 위한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지관리.

□ 공사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3 (영등포공원 내)
- 규 모 : 게이트볼장 조성 1개소 (15m×20m), 평의자 6조설치
- 사업 기간 : 2012. 03. ~ 2012.10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 게이트볼장 1면 : 60,000천원
 - 운동시설 설치 및 공원등 증설 : 40,000천원

□ 주요 변경 사항

- 운동시설 918m² 증가
- 기반시설 251.3m² 및 녹지대 666.7m² 감소
- 시설 률 36.5%→37.6% (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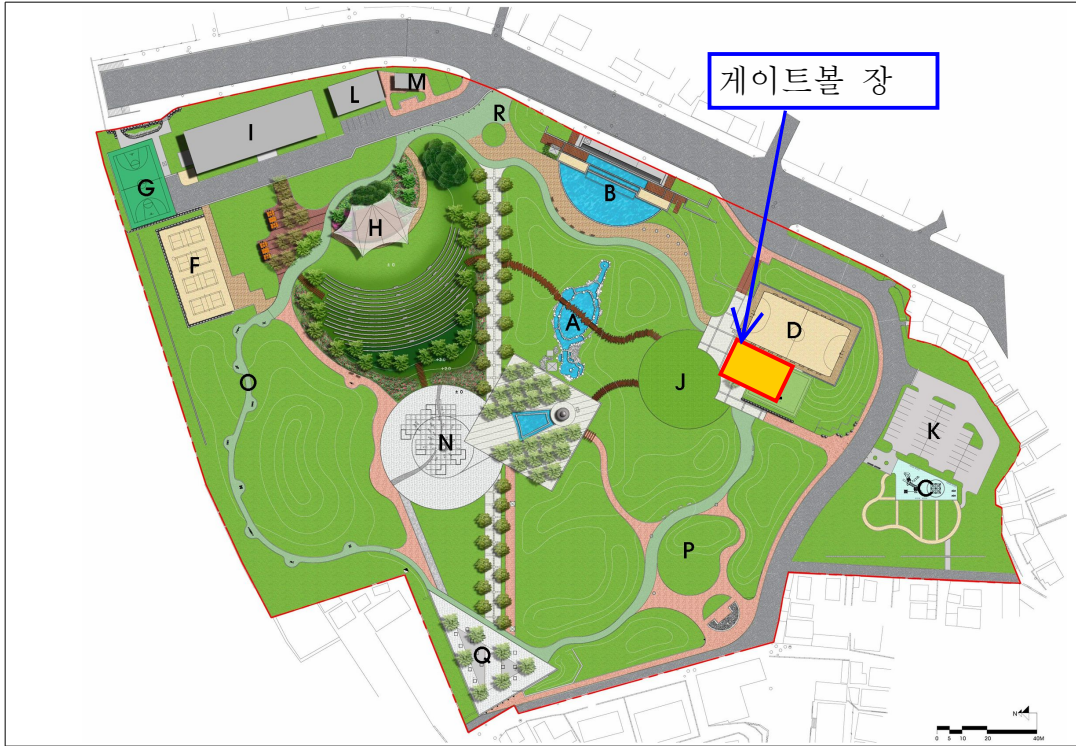
□ 추진 경위

- 2012. 03. 29 : 사업계획 수립
- 2012. 05. 02 : 공원조성 계획(변경) 수립
- 2012. 05. 23 : 열람공고 시행 (주민 의견 청취)
- 2012. 06. 01 : 공원조성 계획(변경) 심의 요청

□ 향후 계획

- 2012. 07 :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 2012. 08 : 실시설계 및 발주
- 2012. 09 : 계약 및 착공
- 2012. 10 : 준공 예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영등포공원 흡연 단속 계획

영등포 공원에서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1.07.18]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02.16]
-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지원과

현 황

- 영등포공원에서 일반 주민은 흡연한 사람이 별로 없으나, 노숙인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흡연한 경우가 많음

추진경위

- 흡연 행위 홍보 및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2명)
- 공원 내 금연 홍보용 현수막 2012. 03. 05 게시 (10매)

향후 계획

- 2012.06 중에 보건지원과 에서 흡연 적발 확인서 수령
- 2012.07.01부터 흡연자 적발 시 확인서 징구하여 보건지원과 송부
- 보건지원과 에서 과태료(10만원)부과 고지서 발부

도시공원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하절기 공원이용률 증가,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고시(2012.1.19) 및 과태료 부과(2012.07.01)시행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흡연행위, 수목훼손, 고성방가, 상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유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공원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3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정 2011.07.18) : 조례 제 851호(보건소 보건지원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2.02.16) : 규칙 제605호
- 특별사법경찰관(리) 제청 및 지명(서울남부지방검찰청)
 - 푸른도시과장 등 7명(2011.12.21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처리

II 도시공원 현황

- 도시공원 : 31개소(203,517.9m²)
 - 근린공원 : 8개소(203,517.9m²)
 - ※ 시공원(2개소 위임관리) : 영등포공원, 중마루공원
 - 어린이공원 : 18개소(54,637.6m²)
 - 소공원 : 5개소(7,545.0m²)
- 서울시 직영관리 도시공원 : 2개소(203,517.9m²)
 - 여의도공원(서부공원녹지사업소) - 229,539.0m²
 - 선유도공원(한강사업본부) - 110,407.0m²

Ⅲ 추진 계획

■ 추진 기간 : 2012. 7 ~ 근절시까지

■ 순찰 및 계도 · 단속시간

○ 평 일 - 09:00 ~ 18:00

○ 공휴일 - 공원근무자 및 단속반 시행(필요시)

■ 점검 및 계도 · 단속

○ 도시공원 내 흡연행위

○ 공원 내 노숙행위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 공원 내 고성방가, 잡상행위 등

○ 공원시설물 훼손행위 단속 및 상황처리

○ 애완동물 배설물 유기행위 및 목줄 미착용 행위

○ 기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

○ 상황별 유관기관 연락처 : 별첨

■ 계도 · 단속반 편성

○ 점검반 편성 및 점검구역 : 5개팀 16명

○ 계도 · 단속반(총괄반장 : 푸른도시과장)

구 분	위치 및 편성			전기시설 CCTV관리	비 고
	위 치	조 장	조 원		
계	31개소	2명	8명	2명	
도시공원	근린공원(6개소)	공원팀장 김종비	녹지7급 이진호 기능8급 노두상	전기9급 김제환	
	어린이공원(18개소)	“	녹지8급 양송희 기능8급 김춘남		
	소공원(5개소)	“	녹지8급 이인호 기능8급 연규성		
	영등포공원 (시위입관리공원)	영등포공원관리팀장 이형	녹지6급 정우환 (기능6급 이수남)	전기장 이수남	
	중마루공원 (시위입관리공원)	“	(녹지6급 정우환) 기능8급 최인석		

IV **공원관리 CCTV현황**

■ 공원관리 CCTV설치현황 및 계획(2012.05현재)

구 분	명 칭	면 적	주 소	대수	설치년도	비 고
근린공원	영등포	61,544.00	영등포본동 582-3일대	9	'09이전	시공원 5대시비배정
				5	'12	12년계획
	중마루	6,456.0	영등포동 2가 222	3	'12	12년계획
	당산	11,154.90	당산1동 3가 385	2	'10	
	차매	16,500.00	여의도동 56	3	'10	
	신길	19,782.00	신길5동341-3일대	3	'11	
	문래	23,611.00	문래동3가 66일대	3	'12	12년계획
	메낙골	51,470.00	신길동 4934-4	3	'12	12년계획
어린이공원	양평	2,845.00	양평2동 4가 301-7	2	'09	
	다사랑	1,632.30	대림2동 703-6	1	'11	
	원지	4,845.10	대림3동 690	2	'12	12년계획
	두암	1,477.80	대림3동 715	1	'12	12년계획
	신우	3,112.50	대림3동 657	1	'12	12년계획
	중앙	3,671.80	영등포동 6가 53-1일대	2	'12	12년계획
소공원	문래	1,954.70	문래동6가 25-1	2	'09	
	꽃담	2,582.30	당산동5가 4-23	2	'11	
차없는거리	두래-진주		문래동5가 22-3일대	1	'11	
자투리땅	전철아파트뒤		신길7동 1347일대	1	'11	
합계	시공원			17		
	구공원			29		

-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 관련) 1부.
 2.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1부.

[별표 4] (개정 2010.7.15)

과태료 부과기준(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 관련)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법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7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원
법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보건소 보건지원과)

(제정) 2011.07.18 조례 제 8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